

주식회사 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제5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

주식회사 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(이하 "회사")의 정기주주총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된다.

- 일시: 2023년 03월 23일(목) 오전 10시
- 장소: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주식회사 서부티엔디 회의실
- 출석현황

주주총수 : 15,945명

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: 55,955,884주

출석주주수 : [220]명

출석한 주주의 주식의 총수 : [38,053,842]주

의장 대표이사 승만호는 본 회의가 정관에서 정한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출석한 주주가 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,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설명하고 개회를 선언하다.

보고사항 1. 감사보고

의장은 김종수 감사로 하여금 감사보고를 설명하게 한 후, 동 보고를 마친다.

보고사항 2. 영업보고

의장은 신한리츠운용 담당자로 하여금 영업보고를 설명하게 한 후, 동 보고를 마친다.

제1호 의안 : 제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

의장은 제1호 의안을 상정하면서, 신한리츠운용 담당자로 하여금 당 회사의 제5기 재무제표를 배부한 회의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자,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제1호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.

제2호 의안 : 현금 배당금 결의의 건

의장은 제2호 의안을 상정하면서, 신한리츠운용 담당자로 하여금 당 회사의 현금 배당금 결의를 배부한 회의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자,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

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제2호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.

제3호 의안 : 제6기 사업계획(안) 승인의 건

의장은 제3호 의안을 상정하면서, 신한리츠운용 담당자로 하여금 당 회사의 제6기 사업계획(안)을 배부한 회의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자,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제3호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.

제4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(4-1, 4-2, 4-3, 4-4)

4-1 : 사내이사 승만호

4-2 : 기타비상무이사 최영집

4-3 : 기타비상무이사 손백승

4-4 : 기타비상무이사 승우진

의장은 제4호 의안을 상정하면서, 사내이사 승만호, 기타비상무이사 최영집, 손백승, 승우진의 임기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재선임하고자 배부한 회의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자,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제4호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.

사내이사 승만호(1957. 07. 15 생)

기타비상무이사 최영집(1971. 02. 22 생)

기타비상무이사 손백승(1977. 08. 16 생)

기타비상무이사 승우진(1989. 02. 23 생)

제5호 의안 : 제6기 이사 보수 승인의 건

의장은 제5호 의안을 상정하면서, 신한리츠운용 담당자로 하여금 당 회사의 이사 보수에 관하여 배부한 회의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자,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제5호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.

제6호 의안 : 제6기 감사 보수 승인의 건

의장은 제6호 의안을 상정하면서, 신한리츠운용 담당자로 하여금 당 회사의 감사 보수에 관하여 배부한 회의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자,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제6호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.



제7호 의안 : 정관 변경의 건[특별결의]

의장은 제7호 의안을 상정하면서, 신한리츠운용 담당자로 하여금 당 회사의 정관 변경에 관하여 배부한 회의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자,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제7호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.

현 행	개 정
<신 설>	<p>제 46 조의 4(전환사채의 발행)</p> <p>① 회사는 본 조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육백억(60,000,000,000)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규정에 의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. 제42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·운용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,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<p>②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,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</p> <p>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.</p>
<신 설>	<p>제 57 조 (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)</p> <p>① 회사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산을 투자·운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</p>
제 57 조 (법규 적용 등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투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 및 「상법」 기타 법령의 관계규정에 의한다.	제 58 조 (법규 적용 등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투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 및 「상법」 기타 법령의 관계규정에 의한다.
<신 설>	<p>부 칙<2023. 3. 23. 개정></p> <p>제 1 조 (시행일) 본 개정 정관은 2023년 3월 23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득한 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</p>

의장은 이상으로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. (총회 종료시간 오전 10시 20분)



위 주주총회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대표이사가 기명
· 날인 또는 서명하다.

2023년 03월 23일

주식회사 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

의장 및 대표이사 승만호

U-shaped mark